



‘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’

전 북 지 방 우 정 청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음주운전 근절 및 처벌기준 강화 알림

1. 관련

가. 운영지원과-2313(2017. 12. 18) 음주운전 근절 청장 특별 지시

나. 감사관-2170(2018. 10. 17) 음주운전 근절 대책 통보

2.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분노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매년 음주운전 사례는 발생되고 있습니다.

○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(전북청)

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4건	5건	7건	3건

3. 또한, 윤창호법(가칭) 통과로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이 다음과 같이 강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, 각 책임직은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, 이후에는 단 한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음주운전 처벌 기준 관련 법률 개정 내용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면허정지 기준	0.05%~0.10%	0.03%~0.08%	도로교통법 개정 (2018.12.07. 의결)
면허취소 기준	0.10% 이상	0.08% 이상	
음주적발횟수 기준	3회 이상 적발시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~1천만원 이하 벌금	2회 이상 적발시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~2천만원 이하 벌금	
면허취소후 재취득 제한 기간	3회 이상 : 3년 제한	2회 이상 : 3년 제한 사망사고시 : 5년 제한	
음주운전 사망사고	1년 이상 유기징역	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징역	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(2018.11.29. 의결)
음주운전 상해사고	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~3천만원 이하 벌금	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~3천만원 이하 벌금	

※ 공무원은 위의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벌(징계)도 처분됨. 끝.

전북지방우정청장



수신자 우정계획과장, 우편영업과장, 우편물류과장, 예금영업과장, 보험영업과장, 운영지원과장, 인력
계획과장, 회계정보과장, 전 관서장

주무관

임상진

감사관

빈윤건

청장

12/10
김성철

협조자

시행 감사관-2631 (2018.12.10.) 접수 ()

☎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(효자동2가) / www.koreapost.go.kr/jb/
전화 [063-240-3712](tel:063-240-3712) /전송 063-240-3719 / lsjdream@koreapost.go.kr / 공개